

청주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가단5556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은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윤종락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근

변 론 종 결 2022. 4. 21.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B와 D 사이에 2016. 12. 1. 체결된 143,000,000원의 증여계약을 30,067,19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C와 D 사이에 2016. 12. 1. 체결된 143,000,000원의 증여계약을 30,067,19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067,19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청구취지 기재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부분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의 오타로 보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제품 생산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D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2011. 7. 29. D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1가소43628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2. 27. ‘D은 원고에게 19,978,02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31.부터 2011. 7. 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12. 1. 26. 확정되었다.

다. 피고들은 2016. 10. 10. E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F 건물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2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6. 12. 1.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2016. 12. 1. G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60,800,000원, 채무자를 피고 C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으로 추정되는 134,000,000원을 제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대금 286,000,000원(= 420,000,000원 - 134,000,000원)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D으로부터 위 매수대금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였던

D이 피고들에게 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607,194원(= 채권원리금 60,134,388원 ÷ 2)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대출금, 피고 B 명의로 계약하였던 기존 주거지의 임대차보증금, 이 사건 부동산의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승계, 모친 H로부터 증여받은 6,500,000원을 제외하면 모두 피고들의 계좌에서 송금된 점, 피고들 계좌의 자금 역시 피고 B가 2006년부터 학원 강사 등을 하면서 받은 급여(합계 343,075,271원), 피고 C이 2013년부터 I대학교 등에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합계 98,953,504원)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들이 D으로부터 원고 주장의 돈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성민